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전기공사업 등록관련 사무 수수료 신설
 - 공사업의 등록신청 : 1건 40,000원
 -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 1건 30,000원
 - 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합병)신고
 -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신고 : 1건 30,000원
 - 상속 신고 : 1건 5,000원
 - 공사업의 등록중(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 1건 5,000원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 1건 5,000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 및 신고 등 수수료 신설
 - 운수사업자등록 등 12건 : 1건당 1,400원~16,000원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친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제2호 나목에 (7) 내지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7)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
(8)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
(9)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㉞	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	1건	30,000
㉟	상속 신고	1건	5,000
(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1건	5,000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
※ (8), (9)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자. 교통관계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4,000 (기본금액에 차량1대당 2,000원씩 추가합산)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기본금액에 차량1대당 2,000원씩 추가합산)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	1건	2,000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등록신청	1건	14,000 (기본금액에 차량1대당 2,000원씩 추가합산)

구	분	기	준	요	액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2,000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신고(동법 제14조 및 제24조)	1건		3,000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주선사업)의 상속신고	1건		3,000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주선사업)의 휴지·폐지신고	1건		1,400	
(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	1건		16,000	
(1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	1건		1,400	
(1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	1건		14,000	
(1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1건		1,4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단위 : 원)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 액	구 분	기준	요 액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시설확인 등 가. (생략)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6) (생략) (7) (신설) (8) (신설) (9) (신설) (10) (신설)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시설확인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u>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u> 1건 40,000 (8) <u>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u> 1건 30,000 (9) <u>전기공사업의 순계(양수상속 합병) 신고</u> ㉔ <u>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u> 1건 30,000 ㉕ <u>상속 신고</u> 1건 5,000 (10) <u>전기공사업의 등록증(농복 수첩) 재교부 신청</u> ㉖ <u>순계(양수,상속,합병)신고</u> 1건 5,000 ㉗ <u>잃어버리거나 헛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u> ※ (8), (9)는 공사업자 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현행		개정안		
다 ~ 아 (생략)		다~아(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교통관계		
(신 설)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4,000 (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추가합산)
(신 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추가합산)
(신 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	1건	2,000
(신 설)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등록신청	1건	14,000 (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추가합산)
(신 설)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주선 약관의신고 또는 변경 신고 (동법 제7조 및 제 24조)	1건	2,000
(신 설)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 주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신고 (동법 제14조 및 제24)	1건	3,000

현행		개정안		
(신설)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 주선사업)의 상속신고 (동법 제15조 및 제24조)	1건	3,000
(신설)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 주선사업)의 휴지·폐지 신고(동법제16조 및 제24조)	1건	1,400
(신설)		(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동법 제21조)	1건	16,000
(신설)		(1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 (동법 제21조)	1건	1,400
(신설)		(1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동법 제37조)	1건	14,000
(신설)		(1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동법 제39조)	1건	1,400

관계법령 발췌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업의 승계) 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생략)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 1의2.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
- 1의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의 수리

제35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2의2.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2의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 5 (생략)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③~④ (생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수료)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